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다845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다845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431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이선기, 이응문, 조훈갑, 길기봉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 김병곤, 김상수, 안재범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수형, 백창훈, 원유석, 임시규,

이태섭, 곽병훈, 강산진, 류창범, 박상용,

김지식

2. D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수형, 백창훈, 원유석, 이윤식,
곽병훈, 강상진, 이송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43169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취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해지 등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이고, ② 상품의 본질과 옵션의 가치, 수수료, 제로 코스트나 환 헤지 부적합성 등에 관한 기망, 착오가 있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며, ③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환율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A가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환율하락이 우세하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 C은 원고 A와 빈번하게 무역금융거래를 하면서 원고 A의 영업상황, 매출액, 외환 유입량 등 주요 정보는 물론 원고 A의 환위험 회피 필요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제1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게 된 점, 원고 A는 피고 C과 9차례에 걸쳐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인(Knock In), 녹아웃(Knock Out) 등을 모두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통화옵션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 요소를 정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점, 피고 C 본점 외환파생영업부 담당직원은 원고 A 재무팀직원에게 통화옵션계약의 오버헤지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환헤지 상품의 근본목적과 위 상품이 투기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한 점, 제1통화옵션계약은 녹인, 녹아웃, 레버리지 조건 등이 부가된 기본적인 형태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약정금액도 원고 A가 체결하였던 기존 통화옵션계약과 동일하여 원고 A로서도 위 계약의 기본구조와 주요 요소 등을 이해하기에 용이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과다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 A의 피고 D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D은행은 원고 A와 2007. 3. 9.

수출매출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외환환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고 A에게 제2통화옵션계약과 같은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게 된 점, 원고 A는 피고 D은행과

제2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C과 10차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인, 녹아웃 등을 경험하여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장단점, 위험성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제2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A는 위와 같은 경험을 기초로 피고 D은행에게 녹인 발생의 위험 가능성이 적고 녹아웃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적은 통화옵션상품을 문의하였고 구체적인 계약체결일자도 원고 A가 피고 D은행에게 먼저 연락하여 정하는 등 제2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통화옵션상품의 구조와 계약체결 시점 등과 같은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하여 원고 A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점, 제2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기간(1년)과 약정금액(100만 달러)은 원고 A가 피고 C과 체결하였던 기존 통화옵션계약의 약정금액과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불합리하게 약정금액이 과다하다거나 계약기간이 장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과다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과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B의 외화유입현황, 수출규모, 환 헤지 필요성, 제3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행이 원고 B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적합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 B는 상고이유로, 피고 D은행이 원고 B에게 오버헤지되지 아니한 적합한 계약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합성 원칙에서 고려하여야 할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자체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은행이 원고 B 제출의 자료와 담당자의 설명을 근거로 제3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금액을 정한 것을 가지고 적합성 원칙에서의 고객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은행에게 적합성 원칙에서의 조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통화옵션계약이 원고 B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D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B는 원화로 받는 매출대금 중 그 금액이 달러 등 외화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어 결제되는 이른바 로컬수출대금은 환헤지 필요성이 없으므로 오버헤지 판단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원고 B가 로컬수출대금을 포함하여 환헤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단순히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B가 제3통화옵션계약 체결 전에 이미 5차례 통화옵션계약 체결경험이 있고 이러한 기존 통화옵션계약을 통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이익까지도 취득한 경험이 있었던 점, 원고 B의 담당직원과 피고 직원이 제3통화옵션계약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점, 원고 B의 담당직원은 제3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 가격과 계약 금액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3통화옵션계약체결 이후에도 E은행, 피고 C와 4건의 통화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그 무렵 통화옵션상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